제2022-3호 2022년 1월 5일(수)



보

시정지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여수시장 ■ 발행소: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시 고 0 여수시 고시 제2022-1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3 0 여수시 고시 제2022-1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ㅇ 여수시 고시 제2022-15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5 공 고 0 여수시 공고 제2022-40호 농업법인 시정명령(2차) 처분의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6 0 여수시 공고 제2022-43호 도로지정 공고(돌산읍 평사리 1273-25) 9 ㅇ 여수시 공고 제2022-47호 도로지정변경공고(여천동 308번지) 10 0 여수시 공고 제2022-54호 도로지정 공고(서덕리 15번지) 11 ㅇ 여수시 공고 제2022-57호 도로지정 공고(복산리 221번지) 12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및 시행규칙」 ㅇ 여수시 공고 제2022-58호 13 폐지(아) 입법예고 0 여수시 공고 주민의 조례 청구 관련 주민(청구권자) 총수 공표 제2022-60호 19

기 타

회				
람				

여수시 고시 제2022-1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1. 사업의 목적: 밭작물 재배
- 2. 사업의 내용: 개간 신청지(임야)를 농경지로 조성
- 3. 사업의 구역
 - 위 치: 전남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산3-2
 - 대지면적: 1,630 m²
 - 개간면적: 1,154m²
- 4. 사업비: (당초) 20,900,000원 (변경) 30.030.000원
- 5. 사업예정기간: (당초) 2020. 4. 6. ~ 2021. 12. 31. (변경) 2020. 4. 6. ~ 2022. 12. 31.
- 6. 사업의 효과: 밭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
- 7. 사업시행자: 여수시 화양면 석교로 11*-1*

궈**

2022. 1. 5.

여수시 고시 제2022 - 14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합니다.

승인번호	점용·사용	점용ㆍ사용	점용ㆍ사용	점용ㆍ사용	피 승 인 자				Ы
(승인일)	장소	면적(m²)	목적	기간	주	소	성	명	고
2022-1 ('22. 1. 5.)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 634-4번지 일원	10,932.4	지방어항(손죽항) 시설공사	2022. 1. 6. ~ 2052. 1. 5.	여수시 시 (학동		여수 [,] (섬자원;		

2022. 1.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여수시의회 의결로 확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회계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022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율
계	1,428,184	1,371,288	56,896	4.1%
일 반 회 계	1,281,036	1,224,140	56,896	4.6%
특별회계	147,148	147,148	0	0%

○ 기금운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회계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022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율
기금(조성액)	115,837	154,137	△38,300	△24.8 %

2022. 1. 5.

공 시 송 달 공 고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농업인 5인 미만,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법인에 대하여 후속조치(시정명령 2차)에 앞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 5.

- 1. 공고기간 : 2022. 1. 5.~ 2022. 1. 19.(15일간)
- 2. 공고내용 : 농업법인 처분의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3.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행정절차 법」제14조(송달)제4항
- 4. 의견제출 대상 및 처분내용 : 상세내역 붙임 1
-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 2022. 1. 19.(수) 18:00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의견제출서 붙임2), 방문, 우편제출
 - 다. 제 출 처 : 전남 여수시 주동1길 3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6. 유의사항 : 위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 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7. 문 의 처: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정팀(☎ 061-659-4404)

(붙임1) 의견제출 대상 및 처분내용

	시정명령	대상법인		반송	처분	처분
법인명	법인번호	대표자	본점주소	사유	사유	사항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장군농산	206211-**	허∗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	폐문부재	농업인 출자비율 10%미만	시정명령
여수해피팜 영농조합법인	206271-**	하*식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	폐문부재	조합원 중 농업인 5명 미만	시정명령
솔로몬영농조합법 인	206271-**	류*곤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폐문부재	조합원 중 농업인 5명 미만	시정명령
나눔영농조합법인	206271-**	권∗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	폐문부재	조합원 중 농업인 5명 미만	시정명령

(붙임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이래의 유의사항	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	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፮:)
	의 견							
	기 타							
「행정절치	└ ├법」 제27조제1	항 및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u>0</u>	µ견제출인			(서)	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유의 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여수시 공고 제2022-43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73-25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11m	3.7m	21 m²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돌산읍 평사리	1273-25	11m	3.7m	21 m²	u	
			이하빈칸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 5.

[여수시 공고 제2022-47호]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여천동 308번지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변경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변경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당초	7	4)	-	-	26		
변경	계		_	_	20		
당초	여수시 여천동	308	29.82	4	26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변경	여수시 여천동	308	29.82	4	20		

※ 도로지정공고(당초): 제2021- 3305호(2021. 12. 9.)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5.

[여수시 공고 제2022-54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15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격	1			4		
돌산읍 서덕리	15	4.09	1	4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도로 후퇴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5.

[여수시 공고 제2022-57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221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격	1			55		
소라면 복산리	221	19.93	2.76	55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5.

여수시 공고 제2022-58호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한 여수 여서·문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1995.12.18.) 및 분양이 완료되어 존치 목적이 상실에 따라 조례 및 규칙 일 괄 폐지

2. 주요내용

- 가.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폐지 (제정 1998. 4. 4. 여수시조례 제97호)
 - 총 17개조(목적, 공급방법, 공급가격의 결정 등) 폐지
- 나.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시행규칙」폐지 (제정 1998. 4. 4. 여수시규칙 제62호)
 - 총 16개조(목적, 분양가격의 결정, 분양방법 등) 폐지
- 3. 조례 및 규칙 폐지안: 붙임3, 4
- 4. 입법 예고기간: 2022. 1. 5. ~ 2022. 1. 25.(20일간)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및 규칙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다.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1) 일반우편: 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국동)
 - 2) 전자우편: haindae@korea.kr
 - 3) 팩스번호: 061-659-5850
- 라.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공영개발과(☎061-659-45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조례」 폐지 의견제출서

	성명 (성별)			[] 대표	사	
		(남,	여)	※ 공동 의견제	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주소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2명을	전화번호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저	세20조 및 「여수	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5	항에 따라 9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ł.					
					년 월	일
		의견제출임	<u> </u>		(서등	병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붙임 2]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조례 시행규칙」 폐지 의견제출서

	성명 (성별))		[] 대표자		
			(남, 여)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주소					
※ 다수가 공동으로의견제출을 하는 경우대표자 2명을선정하여 표시,의견제출인이 다수인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수시 규칙의 제정괴 제출합니다.	· 개정 •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저	베4조
				년	월	일
		의견	년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현	<u>5</u>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붙임 3]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여서 · 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폐지조례(안)

여수시 여서 · 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여수시 규칙 제 호

여수시 여서 · 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여수시 여서 · 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의 조례 청구 관련 주민(청구권자) 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1 제2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주민 조례 청구와 관련한 주민(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19세 이상 주민 총수

(2021, 12, 31, 현재)

19세 이상	19세 이상 주민 중	19세 이상 주민	비고
주민 수	선거권 없는 자의 수	총수	
234,627명	267명	234,360명	2022.1.12.까지 적용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권자 총수 (2021, 12, 31, 현재)

18세 이상 주민 수	18세 이상 주민 중 선거권 없는 자의 수	청구권자 총수	비고
237,415명	267명	237,148명	2022.1.13.부터 적용

2022년 1월 5일